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3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 김상희 · 윤미향 · 이성만

김회재 · 이용빈 · 강민정

이상직 · 홍성국 · 전혜숙

양정숙 · 김승원 · 남인순

인재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자에 대한 경찰청 수사 기록을 활용하여 자살원인과 발생동향을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 제공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제5항,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 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다만,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자 등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 지원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3 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자 통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 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

- 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체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		
리체계 구축) ① (생 략)	리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		
	4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		
	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u>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관리)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			
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	1		
항제2호에 따른 <u>경찰공무원</u>	<u>경찰공무원</u>		
	및 소방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u><삭 제></u>		
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			
대의 구급대원			

②·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 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u>⑤</u> (생 략)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 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 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4
다만,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자 등 자살을 할 위험성
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의 동의 없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
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
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
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
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
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⑦</u>
- <u>제6항</u>
,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u>제5항</u>에 따른 보고 및 <u>제6항</u>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8</u>
<u>제6항</u>
<u>제7항</u>

제12조의3(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 보 수집, 상담, 지원 등 효과적 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 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이 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 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 자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 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 살예방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자 통계 분석이 필요한 경 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 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 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 사사법정보(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

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 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 문 조사 · 연구 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사용방법 · 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 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 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 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u>아니하거나</u>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 ② 국가 및 <u>지방자체단체</u>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 · 2.</u> (생 략)

② ~ ④ (생 략)

	2) <u>지방자치단체</u>	
제	5조(벌칙) ①	
	. 제12조의4제5항을 위반혀	<u> </u>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

- 도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2.・3.(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